



2016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6. 10.

세제분석과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CONTENTS

- I. 주요 내용 및 평가
- II. 소득세
- III. 법인세
- IV. 소비세제
- V. 결론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CONTENTS

I. 2016년 세법개정안 분석

1 주요 내용 및 평가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정부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

기본방향

경제활력
제고
(67건)

민생
안정
(44건)

추진 전략

- 미래 성장동력 확충: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 고용친화적 세제구축: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등
- 투자·수출·소비 활성화: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등
- 기업구조조정 지원: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 한시적 포기 허용 등
- 서민·중산층 지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농수산물 및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확대 등
- 농어민 등 지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확대 등

1 주요 내용 및 평가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경제활력 제고 67건, 민생안정 44건 등 개정항목은 총 215건

기본방향

공평
과세
(30건)

조세제도
합리화
(74건)

추진전략

- 과세기반 확충: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 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 등
- 역외세원 확보: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제도 도입,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제도 도입 등
-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배당유인 감소 및 임금증가유인 증가 등
- 납세자 권익보호: 가산세 부담 완화(납세협력위반 50% 경감) 등
- 납세편의 제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부담 완화, 조세법령 새로 쓰기 등
- 세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개인·법인 간 형평성 제고,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kg당 24원→30원) 등

1 주요 내용 및 평가 (평가)

□ (전체) 현재 경제여건상 정책방향은 시의적절하나, 실효성은 미지수

- 조세의 재원조달 기능 약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215개 개정항목 중 안정적인 세수증대를 위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고 기존에 진행되던 비과세·감면 정비도 이루어지지 않음
- 215개 개정항목 가운데 20개 항목 신설(9.3%), 195개 항목(90.7%) 제도조정 및 일몰연장
- 최근의 세수실적 호조(올해 8월까지 전년대비 20.8조원 증가)가 일시적인 증가로 예상되지만, 향후 사회부문 재정지출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재원마련책이 필요

□ (평가①) 조세의 재원조달 기능 약화

-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총 3,200억원(정부추산, 전년대비 합계기준)으로

<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목별 연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비교 >

(단위: 조원)	합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2011~2015년 평균	1.66	0.08	0.77	0.27	0.55
2016년	0.32	-0.10	0.01	-0.04	0.45

1

주요 내용 및 평가 (평가)



□(평가②) 구조적 개편보다는 소극적 개정

- 대부분 기존 제도에 적용 범위를 조정하거나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구조적인 개편보다 소극적 개정에 그치고 있음
- 특히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절반을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제시되지 않았음
- 최근의 세수실적 호조(올해 8월까지 전년대비 20.8조원 증가)가 일시적인 증가로 예상되지만, 향후 사회부문 재정지출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자원 마련책이 필요

1

주요 내용 및 평가 (평가)

□ (평가③) 비과세 감면정비 방향과 역행

- 최근 3년 동안 비과세 감면 정비가 추진되어 왔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등을 위해 오히려 세제지원 등을 확대하고 일몰을 연장하는 등 조세지출을 확대

<정부 세법개정안의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내역 및 감면액: 2013~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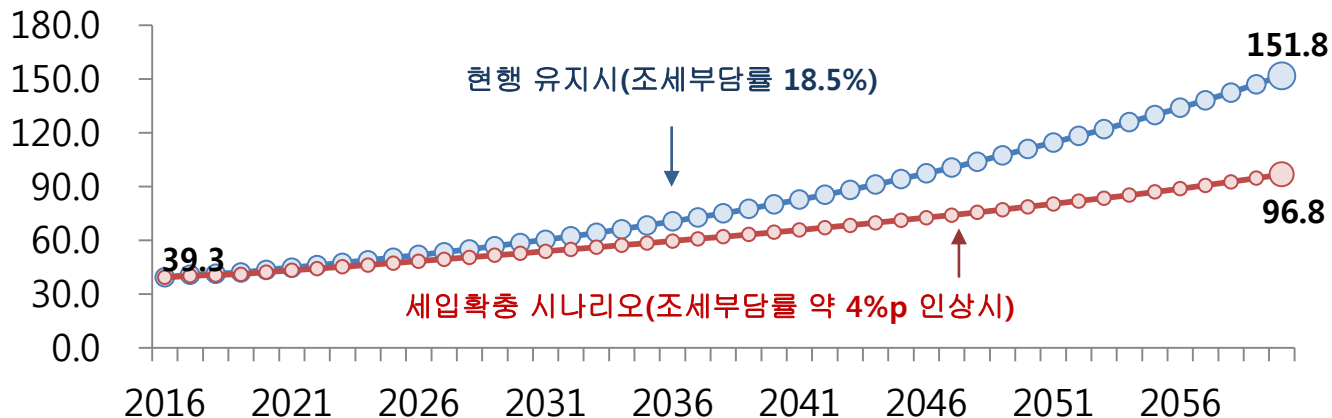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항목수	금액	항목수	금액	항목수	금액	항목수	금액
일몰도래	44	17,010	52	106,777	88	37,851	25	29,573
종료	17	2,127	7	1,906	19	831	4	26
축소연장	17	13,026	8	27,809	8	11,481	3	21,772
확대/단순연장	10	1,857	37	27,062	61	25,538	18	7,775

1 주요 내용 및 평가 (평가)

□ 향후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 필요

-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세수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복지수요가 급증하여 향후 재정건전성이 지속악화 전망
- 중장기적인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세제개편 논의가 필요
 - 안정적 조세수입 확보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공평한 조세부담과 조세정책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방향

< 장기 국가채무 전망: 기준선 vs 세입확충 시나리오 >



2 소득세 (종합평가)

-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의 현실 경기를 감안하여, **서민·중산층에 대한 조세지원을 연장하고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연장, 소액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근로장려금과 월세세액공제 상향조정 등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활 지원도 포함

- 세원확보 및 조세형평성 등 조세의 기본원칙 하에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반복적인 일몰연장으로 세부담 감면이 상시화 되면서, 세수기반이 약화
 - 신용카드 소득공제(99년~, 2014년 조세지출액 1.6조원)
 -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주식 양도소득세,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등)은 걱정하나, 비과세에 대한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항목(주택 임대소득 등)은 조세지원을 축소할 필요
 - 특히,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면세자 축소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한계

2 소득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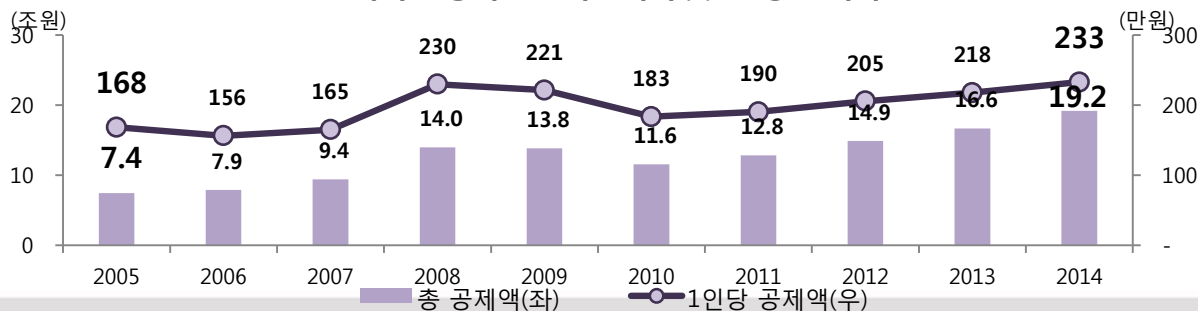
□(개정안)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 단계적 축소

- 공제한도(300만원)의 단계적 축소(소득 1.2억원 초과 200만원, 2019년 7천만원 초과 250만원)

□(평가) 일몰연장과 함께 고소득층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조세지출 감소효과(현행 조세지출액 대비 5.4% 감소)는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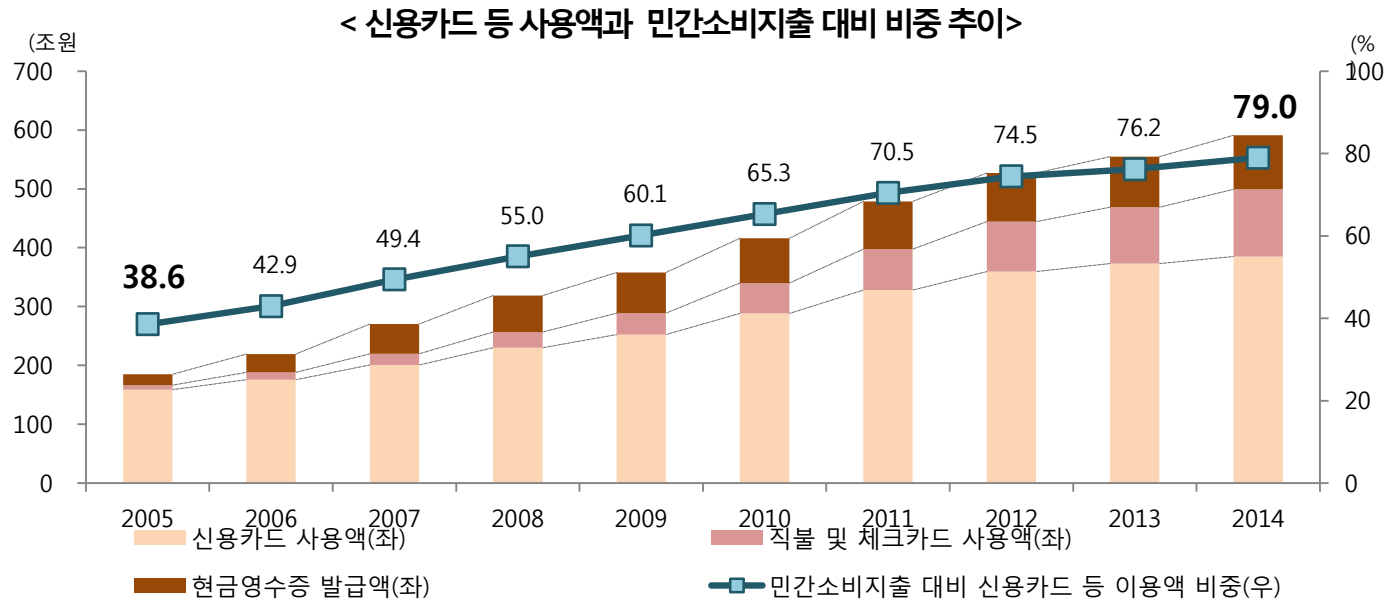
- 1999년 도입 후 일몰연장이 반복되면서 공제가 확대된 상황에서, 민간소비 위축 및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감안할 때 급격한 제도 축소 및 폐지는 어려운 상황
 - 2014년 1인당 평균 공제액 233만원(총19.2조원), 소득 3천만원~1억원 구간에서 80% 이상 공제를 신청
- 다만, 고소득층 공제축소 대상이 일부에 국한되고 조세지출 감소액('20년 959억원, 기획재정부)이 전체 조세지출액('15년 1조7,889억원)에 비해 미미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

<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및 1인당 공제액 >



2 소득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평가) 1999년 도입 후 '자영업자 세원확보'라는 당초 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고, 조세지출 규모가 이미 상당한 수준임을 감안해 **향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게 증가하여 2014년 현재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79%에 도달
- 공제한도 뿐만 아니라 공제기준선·공제율도 **공제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일관적인 조정이 필요**



2 소득세 (주택 임대소득 세제지원)

- (개정안)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기한(2015~2016년)을 2018년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2017년 도입하기로 한 저율 분리과세(14%)가 유예
 - 예시) 2,000만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시, 소득세 112만원(1,200만원 필요경비 적용)

- (평가) 주택 임대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용을 위해 과세를 한시적으로 보류하더라도, 소득 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로 전환 필요
 - 주택 임대소득 과세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저소득 월세 가구 등 임차가구가 체감하는 부담이 커지는 한편, 임대인이 소득 노출에 부담을 느껴 월세 공급이 위축될 우려
 -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소액의 임대료에 의존하는 생활형 임대인보다 다른 소득을 함께 가진 고소득 임대인에 유리해,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향후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세 당국의 임대차 정보 구축,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월세 공급 안정화 조치 등이 선행될 필요

2 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개정안) 상장주식 과세대상을 확대

-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기준: 현행(지분율 1% or 지분금액 25억원)
→ 개정안(1% or 15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대주주 기준: 현행(지분율 2% or 지분금액 20억원 이상)
→ 개정안(2% or 15억원 이상)

□(평가) 소액주주까지 과세되는 선진국 사례,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등 감안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나, 지분율 및 지분금액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OECD국가 중 80%*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
- (지분율 기준) 동일규모 거래라도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의 주주가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 높으므로 기준을 삭제할 필요
- (지분금액 기준) 거래대금 및 양도차익이 크더라도 각 기업의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장기적으로 보유주식 총액기준으로 단일화할 필요

3 법인세 (종합평가)

- 신성장기술, 영화·드라마, 서비스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방향은 타당
 -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신성장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 등
 -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 신설
 -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조세지원 대상에 대부분 포함시킴
 - 고용유발계수(10억원당): 지식기반서비스업(15.3명), 제조업(6.0명)

- 다만, 조세지원 규모가 크지 않고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70여개의 경기부양 조세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지원규모(NABO 추산 연간 지원효과 1,511억원)는 법인세액('17년 54조원) 대비 작은 수준
 - 영상콘텐츠 등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조세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조세를 통한 기업지원은 경제 전체적으로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것으로 판단
 - 2017년 예산안: 27개 지역전략산업('17~'19년 3.1조원), R&D 프로젝트('17~'26년 1.6조원)

3 법인세 (신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개정안)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성장 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견·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인상
 - 현행 R&D비용세액공제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와 일반 R&D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며, 신성장동력 관련 R&D 공제율이 높음
 - 대기업의 R&D공제율: 신성장관련(당기분 20%), 일반R&D(당기분 2~3% 등)
 - 신성장동력 R&D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회계를 일반 R&D와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개정안은 현행 29개 분야, 125개 기술인 신성장동력 R&D를 11개 분야로 개편하고, 중견·대기업의 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인상하는 방안

3 법인세 (신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평가) 현재 납세협력비용으로 인해 신성장 R&D 공제 신고실적이 저조한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부족 예상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공제의 경우 높은 공제율에도 불구하고 투자증가속도(12.2%)가 일반 R&D(13.4%)보다 떨어지고 한 전체 R&D의 0.3%에 그치는 등 신고실적이 저조
 - 대기업의 R&D 공제율: 신성장 관련(당기분 20%), 일반R&D(당기분 2~3% 등
 - 관련 회계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는 등의 납세협력비용으로 인해 높은 공제율을 포기하고 일반 R&D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 발생
- 정부는 신성장 기술의 조세특례 가능여부를 확인해주고 공제신청 기업을 안내하는 등 기업의 지원자(helper)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

< R&D 비용금액 : 2009~2013년 >

(단위: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연증가율
일반R&D	280,849	327,006	380,653	430,810	464,315	13.4%
신성장R&D	810	1,026	1,180	1,419	1,284	12.2%
(전체 대비)	(0.29%)	(0.31%)	(0.31%)	(0.33%)	(0.28%)	

3 법인세 (고용관련 세제지원 강화)

□(개정안)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고용 관련 세제지원이 확대

- 서비스업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대부분 포함
 - 고용유발계수(10억원당): 지식기반서비스업(15.3명), 제조업(6.0명)
- 고용·투자·R&D 관련 조세지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대상을 거의 모든 업종(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으로 확대

□ (평가) 기업측면에서 정부의 조세지원 강화는 기업의 고용 관련 의사결정 특성상

그 효과에 한계가 있으므로, 노동자 측면에서 근로장려세제 등의 확대방안이 효과적

- 고용 관련 조세특례제도는 시행시기가 짧고 전체 지원규모가 연간 1,349억원으로 작음
 - 분야별 조세지출액(2017년 기준): R&D(2.1조원), 투자(1.5조원)
- 기업의 고용 관련 결정은 경영에 20~30년 동안 영향을 미치는 점, 인건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사회보험료, 사무실비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선택되는 경향
- 정부는 저소득층의 노동공급 확대 측면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10%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임금 노동시장에서는 동 방안이 효과적

3 법인세 (가계 소득 증대세제 재설계)



□(개정안) 2015년 가계소득 증대세제 시행 이후 임금·투자보다 **배당만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재설계**

- 기업소득 환류세제: 임금유인을 높이고 배당유인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중치 조정
- 배당소득 증대세제: 종합과세자(25% 분리과세→ 5% 세액공제 전환), 분리과세자(9% 세율 유지)
-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초과시 세액공제 적용

□(총평) 개정 방향은 적절하나 **세수효과(82억원)가 작고 적용기간이 1년인 점은 한계이며, 보다 근본적으로 3개 제도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필요**

- 현행 제도 시행 후, 전체 기업의 배당액은 전년대비 25.1%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 임금(8.2%), 투자(△ 4.3%)는 2009~14년 증가율(임금 9.6%, 투자 5.3%)보다 모두 낮은 수준
- 개정안을 적용하면 배당이 늘어났던 문제점의 개선은 기대되지만 세수효과는 미미
 - 3개 제도의 세수효과 합계 82억원(환류 587억원, 배당 △216억원, 근로 △289억원)
- 한시적(2015~2017년)으로 운용되는 **가계소득증대세제에 대한 개정은 1년만 적용되는 한계**

3 법인세 (가계 소득 증대세제 재설계)

□(기업소득환류세제 평가) 제도 시행 후 배당을 중심으로 임금·투자에 대해서도 정책효과가 일부 발생하였으며, 개정안 적용시 배당유인은 감소하지만 임금증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 과세대상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 등)과 미대상기업으로 구분하여 비교

-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과세대상기업은 미대상기업보다 **배당이 크게 증가**하였고, **임금과 투자의 경우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효과** 발생(아래 표 참조)
- 개정안(임금증가 가중치 증가, 배당 가중치 감소) 효과
 - 배당증가유인이 감소하고, 과세기업이 기존보다 90개(628개→718개)가 추가되는 등 연간 587억원 (세수효과: 현행세법 5,863억원→개정안 6,450억원)의 세수 증가 기대
 - 한번 인상되면 다시 낮추기 어려운 임금의 **하방 경직성** 등을 고려하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임금증가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대상기업의 행태변화 비교: 2015년 전년대비 증가율 >

	배당	임금	투자
과세대상기업	29.0%	9.5%	2.9%
미대상기업	3.3%	5.8%	Δ32.1%

3 법인세 (가계 소득 증대세제 재설계)

□ (배당소득 증대세제 평가) 배당세제만의 효과는 전체 배당의 1.2%(3,562억원)에 불과, 제도운용에 따른 비용(1,324억원)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제도의 조기폐지도 가능

- 제도도입 이후 ‘배당세제만 적용가능기업’의 배당증가율 증가효과(59.4%p)가 상당하지만, 기업규모(평균자본액 276억원)가 작아서 2015년 배당액(3,562억원)은 전체 배당의 1.2%
- 배당소득 증대세제 연간 세수효과: △ 1,324억원(2016년, NABO 추정)
- 환류세제만 적용가능기업’(25.3%p)과 ‘환류세제·배당세제 적용가능기업’(17.4%p) 또한 배당증가율 증가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전체 배당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87.6%

< 환류세제 및 배당세제 대상기업의 배당증가 비교 >

(단위: 억원)	환류, 배당 모두 적용	배당세제만 적용가능기업	환류세제만 적용가능기업	양 제도 미해당기업	전체
법인수	468개	446개	2,273개	20,374개	23,561개
평균자본액	12,791	276	3,297	98	662
배당증가효과 (09~14년→15년)	17.4%p (9.4%→26.8%)	59.4%p (9.9%→69.3%)	25.3%p (6.4%→31.7%)	Δ9.8%p (8.7%→Δ1.1%)	
2015년 배당액	135,911	3,562	114,722	31,812	286,007
(전체대비)	(47.5%)	(1.2%)	(40.1%)	(11.1%)	(100,0%)

4 소비세제 (종합평가)

□ 민생안정, 역외세원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적절

- 중소재활용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몰연장
- 역외세원 확보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제도 및 국외전출세제 도입

□ 다만, 제도의 도입취지를 약화시키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들 상존

- 반복적인 일몰연장은 세수기반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매출규모에 따른 한도를 설정하여 조세지원 규모를 축소할 필요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76년~, 2.1조원),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92년~, 0.7조원)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은 소비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정책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

4

소비세제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 (개정안)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kg당 24원 → 30원**)
 - 저열량탄의 경우 kg당 27원, 고열량탄의 경우 kg당 33원의 탄력세율 적용

- (평가) 지구온난화·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과거 과세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의 **유연탄 소비에 큰 변동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 부족**
 - 유연탄의 가격 변화와 수요량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2014년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 후에도 2015년 소비량이 감소하지 않았음
 - 2011~2013년 동안 발전용 유연탄 소비량의 가격탄력성은 0.03~0.26으로 비탄력적
 - 2013~2015년 동안 발전용 유연탄의 가격과 소비량이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
 - 향후 환경오염 억제 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원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에너지과세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및 논의가 필요
 - 각 에너지원의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수준을 감안하여, 탄소배출계수에 비례한 세율 설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4

소비세제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기한연장)

- (개정안)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세제지원 목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2년 연장**
 - 재활용사업자가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재활용품 및 중고자동차의 경우, 매입가격 가운데 일정금액을 공제(공제율: 재활용폐자원 3/103, 중고자동차 9/109)

- (평가) 개정안은 **중소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주로 대규모 사업체가 조세지원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매출규모에 따른 한도설정이 필요**
 - 최근 폐기물의 재활용률 증가와 중고자동차거래가 활성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보다 ‘중소사업자의 지원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민생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대상에는 제한이 없어, **매출규모가 큰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적용대상 및 지원규모를 제한할 필요**
 - 재활용폐자원 평균경감세액: 하위 30%(170만원), 중위 40%(630만원), 상위 30%(1,880만원)

4 소비세제 (국외전출세 신설)

- (개정안) 거주자의 국외전출로 과세되지 못하는 국내재산의 경우,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세를 신설
 -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해외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일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며, 납세의무자를 대주주로 한정
- (평가) 국외전출세의 도입은 역외세원 확보와 국내 거주자와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역외탈세를 방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어 예방적 효과 기대
 - 향후 국외전출세의 과세대상 범위(국외주식, 파생금융상품, 조합 등 출자지분 등)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자의 국내자산과 역외자산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
 - 일본에서 거주자의 국내자산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산채무조서(財産債務調書)」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재산채무조서(財産債務調書)」제도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채무에 대하여 종류별로 그 금액이나 수량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에 매년(3월 15일) 제출하는 제도

5 결론

- 미약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이 2015년 이후 개선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구조적 개편보다는 소극적 개정에 그침
 - 2016년 8월 현재 국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0.8조원 증가하였으나, 실물경기 회복보다는 정부의 징세노력, 자산시장 호조 등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됨
 - 금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0.32조원)는 예년 평균치(1.66조원)에 크게 미치지 못함
-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부문 재정지출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에 대한논의가 필요**
 - 매년 반복적이고 연례적인 세법개정이 아닌 중장기적인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 세제개편 논의**
- 현행 조세구조의 특징과 세목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세체계를 구축할 필요
 - 안정적 조세수입 확보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공평한 조세부담과 조세정책의 투명성 강화 필요
 - 자원배분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응익원칙(benefit principle)과 응능원칙(ability-to-pay principle)의 조화를 이루는 세제개편 필요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 분석

2016. 10.

세수추계2과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CONTENTS

- I. 조세지출 개요
- II. 조세지출 운용 현황
- III. 2016년 조세지출 정비현황
- IV. 2016년 조세특례평가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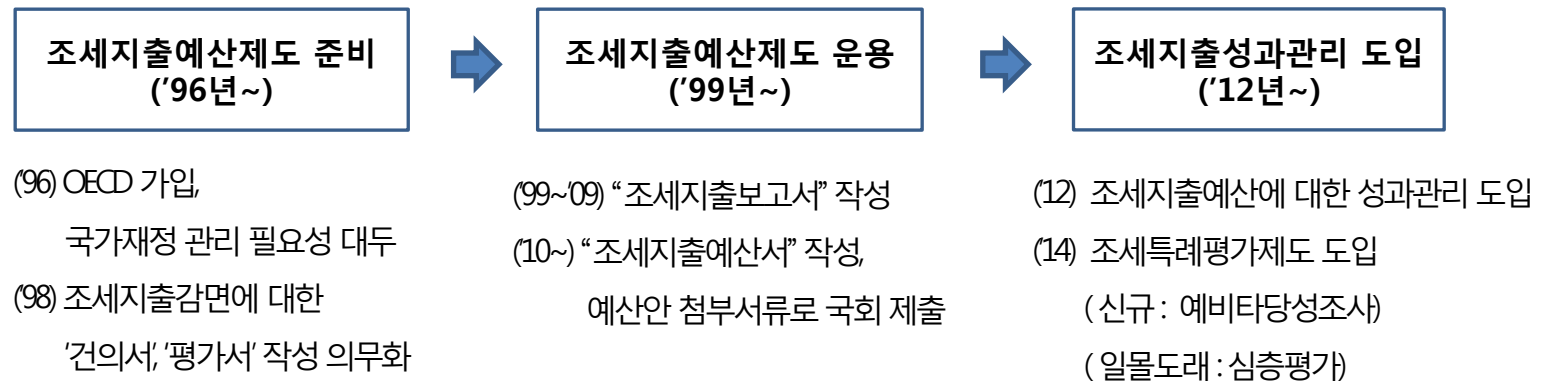
CONTENTS

I . 조세지출 개요

1 개요

-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징수해야 할 조세를 감면해주는 간접적 지원”으로 국가세입의 감소를 초래
- 2010년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 「국가재정법」 제34조에 근거, 3개연도(직전, 당해, 다음해) 국세감면액을 수록, 국회 의무제출

〈우리나라 조세지출예산제도 운용 경과〉



2 개요

〈주요 조세지출 현황〉

(단위: 조원)

	소득세	금액	법인세	금액	부가가치세	금액
1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2.5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1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5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9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0.9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1.6
3	연금보험료공제	1.8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0.9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6
4	자녀세액공제	1.4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등 감면	0.7	방위산업물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0.7
5	근로장려금	1.2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0.6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0.6
6	교육비 세액공제	1.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0.2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0.4
7	연금계좌세액공제	1.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0.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0.4
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0.2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0.2
9	의료비 세액공제	0.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0.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0.2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0.9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0.1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0.1

주: 조세지출 금액은 2017년 전망치임

자료: 행정부,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6. 10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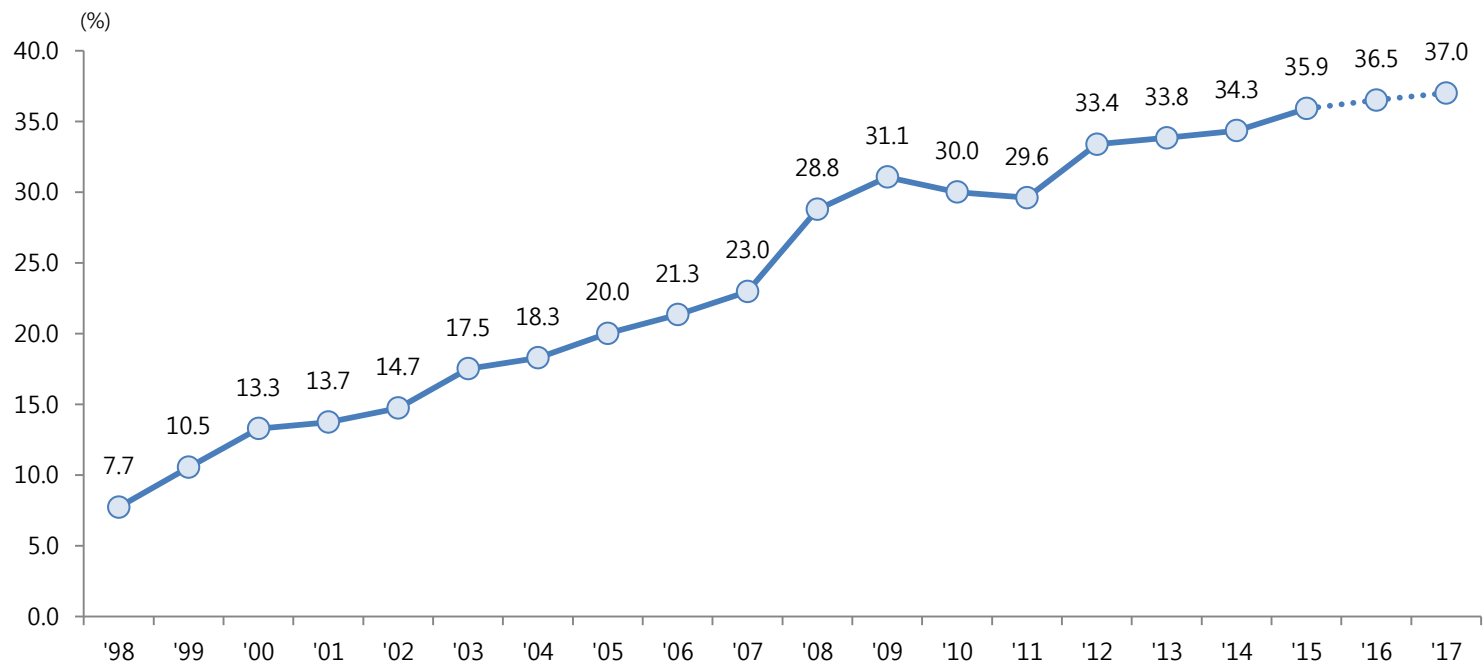
II. 조세지출 운용 현황

1

조세지출 운용 현황

□ 조세지출 규모: 2015년 35.9조원에서 2016년 36.5조원, 2017년 37.0조원으로 증가할 전망

〈국세감면액 추이 : 1998~2017년〉



자료 : 행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조세지출 운용 현황

- 2017년 기준 조세지출은 분야별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및 “사회복지”(56.7%), 수혜계층별로 “개인”(67.3%) 부문에 집중

〈조세지출 운용 현황 : 2015~2017년〉

(단위: 조원, %)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조세지출		35.9	8.5 ¹⁾	36.5	8.4	37.0	8.5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0.7	29.7	10.7	29.4	10.6	28.8
	사회복지	9.4	26.2	9.8	26.9	10.3	27.9
수혜 계층	개인	24.4	68.1	24.1	66.1	24.9	67.3
	(중·저소득자)	(15.8)	(44.0) ²⁾	(16.2)	(44.3)	(16.7)	(45.2)
	(고소득자)	(8.6)	(24.0)	(8.0)	(21.8)	(8.2)	(22.1)
	기업	10.8	30.2	11.8	32.4	11.5	31.1
	(중소기업)	(6.1)	(17.0)	(6.7)	(18.4)	(6.7)	(18.0)
	(상호출자제한기업)	(2.8)	(7.9)	(3.0)	(8.2)	(2.8)	(7.6)

주: 1. 조세지출액은 2015년 실적치, 2016~2017년 전망치임

1) 총재정지출(재정지출+조세지출) 기준 비중값임

2) 전체 조세지출 대비 비중값임

자료: 행정부,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CONTENTS

Ⅲ. 2016년 조세지출 정비현황

1

2016년 조세지출 정비현황: 행정부 기준



□ 행정부 발표 2016년 조세지출 정비효과: 2017~2021년 총 960억원 예상

- 조세지출 확대 개정안 등이 제외되어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조세지출 변동에 대한 파악 곤란
- 동 세수효과는 '2012~2015년 세법개정안'의 평균 정비효과 1조 1,893억원의 1/10 수준에 불과

<2016년 행정부의 조세지출 정비 현황: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항 목	세수효과
신설(5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 433
폐지(4개)	'해외자원개발투자 등의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등	26
제도 축소(3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1,377
제도 확대	미포함	-

2

2016년 조세지출 정비현황: NABO 재추계

□ NABO 재추계 결과: 2017~2021년 총 -2,454억원(행정부와 차이: -3,414억원)

○ NABO 재추계시 포함 항목(행정부 정비현황 추계시 제외된 항목)

- ① 일몰 도래, 제도확대(4개): “석유 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 확대” 등
- ② 일몰 미도래, 제도확대(54개):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 등
- ③ 일몰 미도래, 제도축소(6개):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배제사유 추가” 등

〈2016년 조세지출 정비 세수효과 비교: 행정부 vs. NABO〉

(단위 : 억원)

		행정부 추계 (A)	NABO 재추계 (B)	차이 (B-A)
신설 ①		- 443	- 443	0
폐지 ②		26	26	0
제도 변경	축소 ③	1,377	1,377	0
	확대 ④	—	- 3,414	- 3,414
합계(①+②+③+④)		960	- 2,454	- 3,414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CONTENTS

IV. 2016년 조세특례평가

1. 평가 개요
2. 평가 결과 분석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CONTENTS

1. 평가개요

1

2016년 조세특례 평가 개요



□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신규, 일몰도래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2014년 『조특법』 개정(제142조)에 근거, 2015년부터 시행
- (예비타당성 조사) 신규 조세특례 도입안에 대한 사전평가로, 정책성/경제성/형평성 평가
→ 세법개정안 반영 여부 판단
- (심층평가) 기존 조세특례 제도에 대한 사후평가로, 타당성/효과성 분석
→ 제도의 존치 여부 및 개선방안 판단

□ 2016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 : “예비타당성 조사” 2건, “심층평가” 6건

-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부처 건의 → “공동·위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등 2건
- (심층평가) 2016년말 일몰도래 총 26건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등 6건

2

2016년 조세특례 평가 개요



□ 평가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 2건→세법개정안 미포함,
심층평가 6건→모두 일몰연장

- (예비타당성 조사) 정책목표 달성가능성 저조, 효과성 입증 곤란 등으로 종합평가점수 기준미달
- (심층평가) “재활용폐자원 등 VAT 과세특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정책적 필요성 인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등 → 공제한도 차등적용, 특례세율인상 등 제도개선

<2016년도 조세특례 평가 결과>

	항목	규모(억원)	세법개정안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총 2건)	1. 공동 · 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693.1	미포함
	2. 기술거래 조세지원 확대	574.4	
심층평가 (총 6건)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8,163	축소, 일몰연장
	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1,423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1,199	
	4. 재활용폐자원 등 VAT 과세특례	5,780	단순일몰연장
	5.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684	
	6.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1,074	확대, 일몰연장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CONTENTS

2. 평가결과분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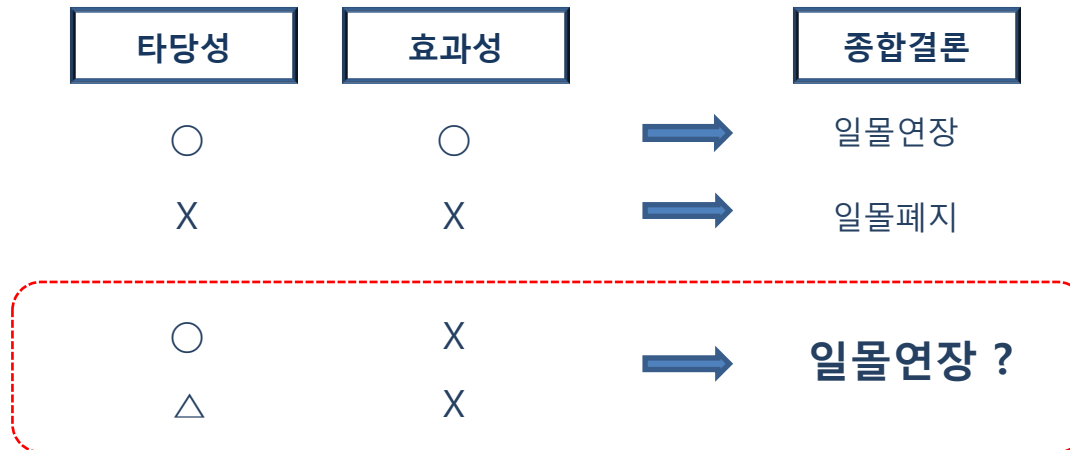
조세특례 평가 검토 의견



□ 종합결론 도출을 위한 “객관적 판단기준” 마련 필요

- 평가부문별 분석 결과가 상이할 경우, 종합 결론을 도출하는 “객관적 판단기준” 부재
 - 효과성 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몰연장의 종합결론이 제시됨에 따라 정비효과 미미
- ※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 환경규제와 중복, 규제 대비 낮은 실효성 등에도 불구하고 “일몰연장”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효과성 분석결과가 유의하지 않으나 “일몰연장”

<조세특례 평가결과의 종합화 과정>



2

조세특례 평가 검토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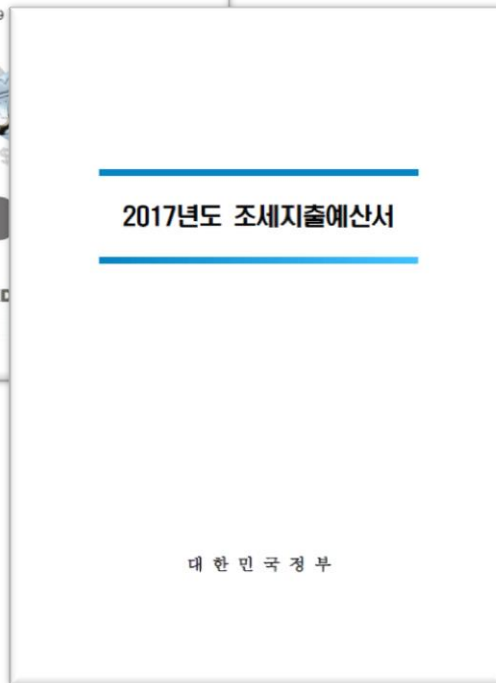


□ 비과세 · 감면 정비원칙 준수 필요

- 조세특례 평가결과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제도를 폐지 할 필요
- 행정부는 조세특례 평가결과 일몰연장의 근거가 미흡한 경우에도 세법개정안에 일몰연장으로 반영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 등의 타당성 · 효과성이 낮게 평가되었으나,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일몰연장

□ 일몰규정 없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일몰규정 도입”, 연간감면액 300억원 미만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

- 현행 조세지출 성과평가는 신규, 일몰도래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실시
 - ※ 2016년 현재 일몰규정 없는 항목: 총 78개(전체 항목수 34.0%), 감면액 총 21.7조원(전체 감면액 59.0%)
- 소규모 조세특례의 경우 ‘일몰 도래시 원칙적으로 종료’, 필요시 제도 재설계
 - ※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하는 ‘조세지출평가서’ 및 ‘조세지출평가계획서’ 국회 제출 필요





감사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2016. 10.

세수추계1과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CONTENTS

- I. 2016년 1~8월 국세수입 실적 및 호조원인 / 3
- II. 2016년 국세수입 전망 / 6
- III. 2017년 국세수입 전망 / 8
- IV.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 11
- V. 법인세수 개선원인 / 12
- VI. 자산시장과 국세수입탄성치간의 관계 / 15
- VII. 요약 및 결론 /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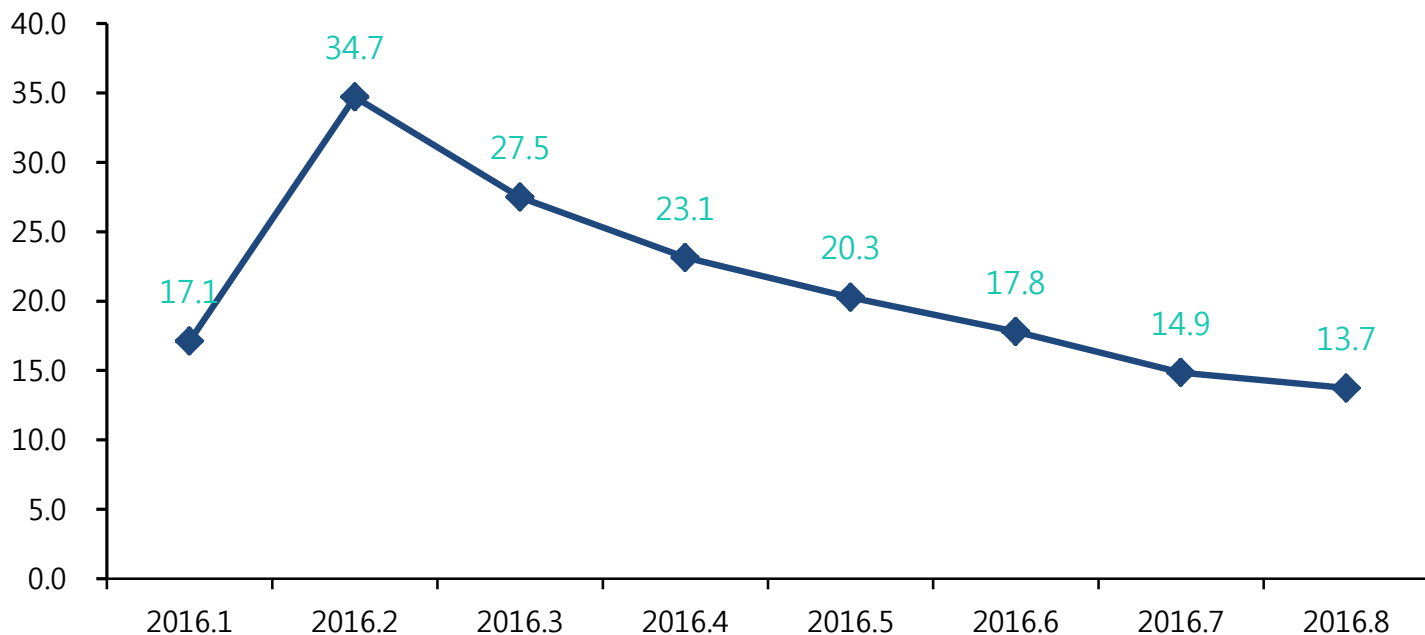
I. 2016년 1~8월 국세수입 실적 및 호조원인

□ 금년 1~8월 중 국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4%(+20.8조원)의 높은 증가율 기록

▪ 증가추세는 ¼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신장세

- 국세증감(조원, %): (16.Q1)13.8/27.5 (16.Q2)4.9/8.6 (16.Q3)1.8/4.1

2016년 1~8월 국세수입 추이(전년동기대비 %)



I. 2016년 1~8월 국세수입 실적 및 호조원인

- 일시적 요인 → ¼분기 전년동기대비 세수증가율 27.5%(+13.8조원)
 - (양도소득세 ¼분기 41.7%) 2016년 비업무용 토지 중과제도 부활을 앞두고
2015년말 부동산 거래 급증(전년동기 대비 8.1%), 징세시차로 2016.1/4분기에 징수
 - (부가가치세 ¼분기 43.7%) 2015년 말 세수 완급조정을 위한 환급시기조정이
2016년 초 환급감소로 이어짐
- 2015년 법인실적 개선 등 → 2016년 법인세수 반등
 - 법인세수 증가율(%) : (13) -4.5 (14) -2.7 (15) 5.6 (16.8월) 21.8
 -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원가절감으로 2015~2016년 상반기 중 기업의 수익성 개선

유가증권시장 기업 영업실적(전년동기대비 %)

	2015년		2016년	증감
	상반기(A)	연간	상반기(B)	B-A
매 출 액	-4.7%	-3.0%	0.6%	+5.3%p
영업이익	7.3%	14.2%	14.4%	+7.1%p
순 이 익	-1.4%	3.1%	20.2%	+21.6%p

I. 2016년 1~8월 국세수입 실적 및 호조원인

□ 자산시장 호조세 지속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자산관련 세수의 호조세 지속

- 부동산 거래량은 2016년 1~2월 중 급감하였다가 3월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3~8월 거래량은 201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까지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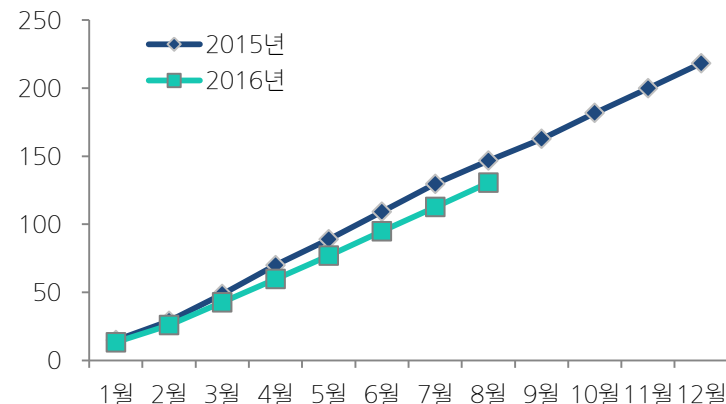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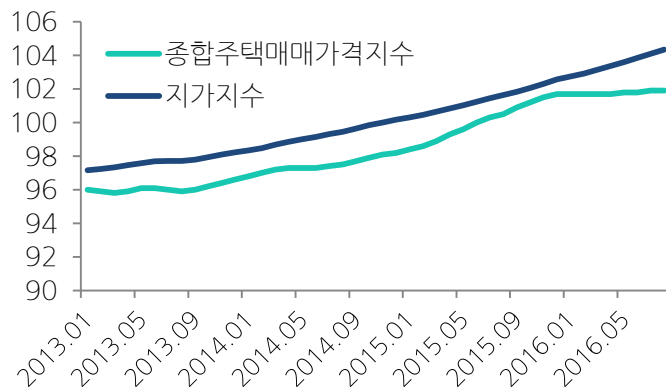
□ 소비 회복, 수출감소에 따른 환급금 감소

- 수입분 부가가치세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따른 소비회복세,
수출감소로 인한 환급금 감소 등에 따른 국내분 부가가치세가 증가가 전체 부가가치세수 증가로 이어짐

* 2016.1~8월 부가가치세수 증가율 : 전체(18.1%) 국내분(65.0%) 수입분(-8.0%)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 (16.1/4분기)4.5 (16.4)4.2 (16.5)5.4 (16.6)9.1 (16.7)4.4 (16.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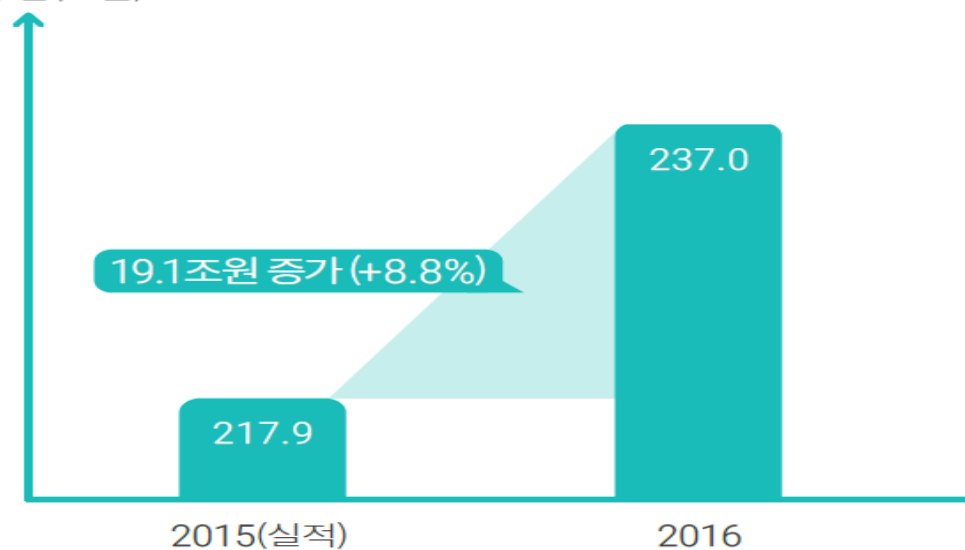
부동산 가격지수와 매매거래량 추이



II. 2016년 국세수입 전망

- 2016년 국세수입은 237.0조원으로 2015년대비 19.1조원(+8.8%) 증가하고 예산(추경기준)을 4.3조원 상회할 전망
- 8월 이후 증가추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법인세 소득세의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증가율은 2015년에 비해 확대될 전망(6.0% → 8.8%)
 - 국세수입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전망(4.0%)의 두 배를 상회
 - 국세탄성치 추이: (13)0.3 (14)1.0 (15)1.2 (16)2.2

국세수입(조원)



II. 2016년 국세수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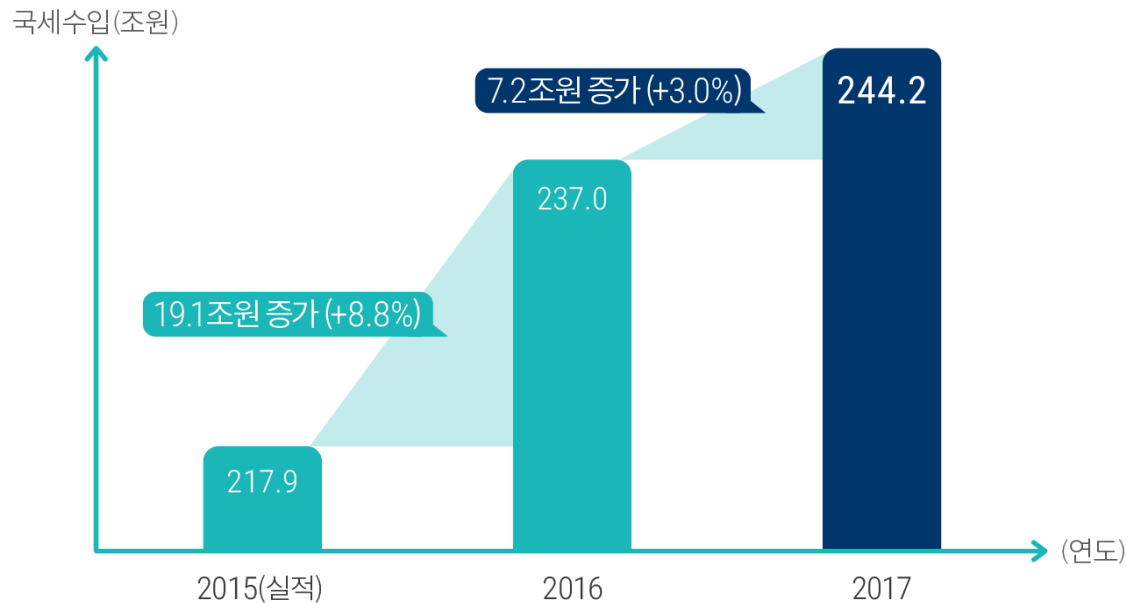
세목별 전망

	2015	2016					
		예산 (추경기준)	NABO 전망	15년대비		예산대비	
				(조원)	(%)	(조원)	(%)
국세	217.9	232.7	237.0	19.1	8.8	4.3	1.8
소득세	60.7	63.3	65.2	4.4	7.3	1.9	2.9
법인세	45.0	51.4	52.6	7.6	16.9	1.3	2.5
부가가치세	54.2	59.8	58.8	4.7	8.6	-0.9	-1.6
개별소비세	8.0	8.6	8.7	0.7	9.0	0.1	0.8
교통·에너지·환경세	14.1	14.8	15.3	1.2	8.5	0.4	2.8
관세	8.5	8.3	8.3	-0.2	-2.5	0.0	-0.1
기타	27.4	26.5	28.1	0.7	2.6	1.6	6.2

Ⅲ. 2017년 국세수입 전망

- 2017년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3.0%(+7.2조원) 증가한 244.2조원으로 전망
 - 자산시장 호조세의 약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2016년에 비해 증가추세 둔화 예상 (8.8% → 3.0%)

2016~2017년 국세수입 전망(NA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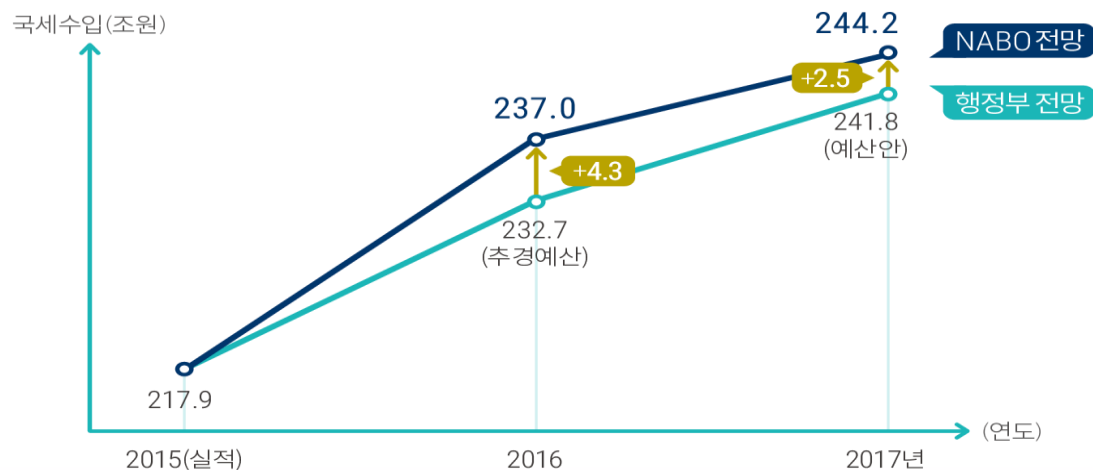
Ⅲ. 2017년 국세수입 전망



행정부 국세세입 예산안과의 비교

- NABO의 2017년 국세수입 전망은 행정부의 세입예산안(241.8조원)보다 2.5조원 높은 수준
 - 2017년 NABO의 국세수입 증가율 전망(3.0%)은 행정부(3.9%)보다 낮은 수준이나,
 - 2017년 성장률 전망치(실질/경상) : (NABO) 2.7/3.9 (행정부) 3.0/4.1
 - 17년 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16년 국세수입을 NABO가 행정부보다 높게 보는데 기인

2017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Ⅲ. 2017년 국세수입 전망



세목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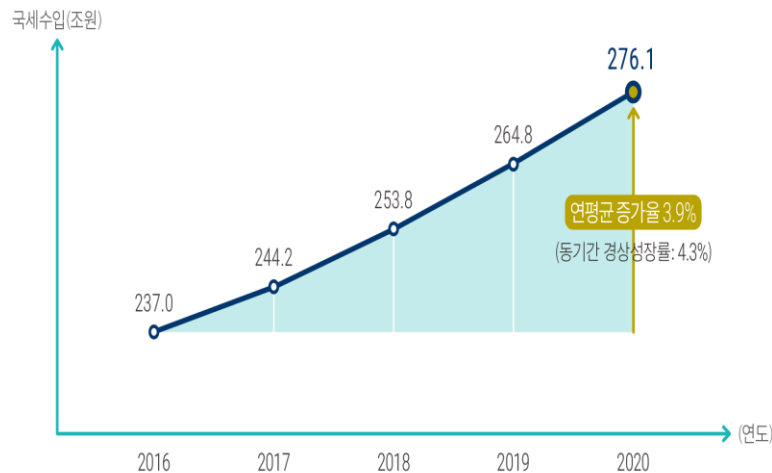
	행정부(A)	NABO(B)	차이(B-A)
국세	241.8	244.2	2.5
일반회계	234.6	237.2	2.6
내국세	203.8	206.7	2.9
1. 소득세	65.3	68.1	2.8
2. 법인세	54.0	54.2	0.3
3. 부가가치세	61.5	61.2	- 0.3
4. 개별소비세	9.0	9.0	0.0
5. 기 타	23.0	23.2	0.1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15.4	15.5	0.2
관 세	9.0	8.5	- 0.5
교 육 세	5.1	5.1	0.0
종합부동산세	1.4	1.4	0.0
특별회계	7.1	7.0	- 0.1
주 세	3.3	3.3	- 0.1
농 특 세	3.8	3.7	- 0.1

IV.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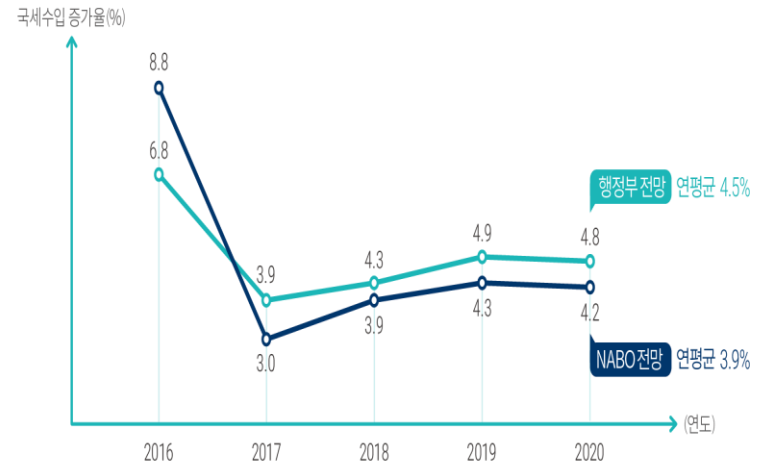
□ 2016~2020년 간 국세수입 증가율은 자산시장 호조세 약화위험 등으로 행정부안을 하회할 가능성

- 최근 세수호조를 견인하고 있는 자산시장 호조세는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부실 위험, 주택공급 과잉 우려 등으로 중기적으로 하방위험 확대
- NABO는 2016~2020년 국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행정부안(4.5%)에 비해 낮은 3.9%로 전망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NABO)



2016~2020년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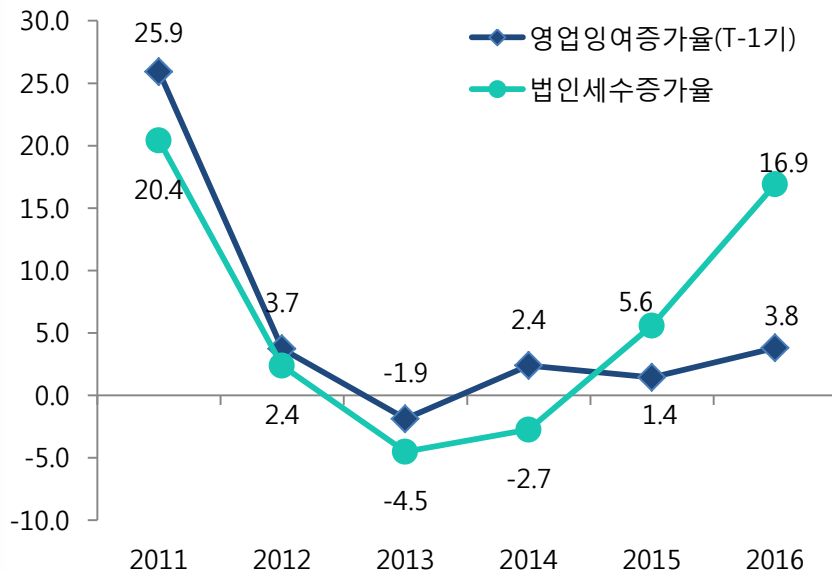
V. 법인세수 개선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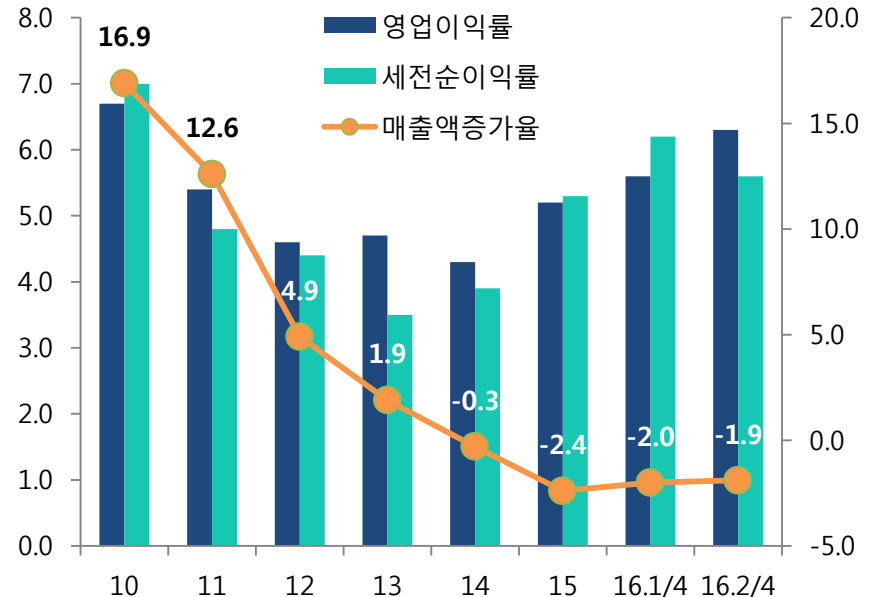
기업 수익성 개선

- 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용 감소로 2014년 이후 일부 이익지표들이 개선되기 시작하여 15년~16년 상반기중 이익률 개선세 확대
 - 저유가의 영향으로 석유화학, 정유, 항공사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

영업잉여와 법인세수(전년동기대비 %)



상장기업 수익성 지표(%)



V. 법인세수 개선원인



기업 수익성 개선

업종	주요 포함 기업	2016년상반기(조원)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매출	영업이익	매출	영업이익
11대산업계		400.2	32.0	- 1.3	11.5
전자	삼성전자, LG전자 등	141.5	16.2	1.0	- 1.9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74.1	4.5	10.0	0.2
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25.4	0.6	- 10.1	흑자전환
철강	포스코, 현대제철, 동부제철	34.4	2.1	- 12.3	- 3.6
정유	SK이노베이션, S-oil	27.4	3.1	- 20.8	43.8
석유화학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22.7	2.8	3.4	40.6
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8.4	0.5	0.3	169.6
해운	현대상선, 한진해운	5.3	- 0.8	- 27.2	적자전환
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19.9	0.7	8.6	2.7
통신	KT, SK텔레콤	19.7	1.6	1.9	8.3
유통	롯데쇼핑, 이마트	21.5	0.6	3.4	- 16.4

자료: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및 전국경제인연합회

V. 법인세수 개선원인



제도적 요인

- 2015년 이후 법인세수 증가는 최저한 세율 인상 등 제도적 요인에도 일부 기인
 - 2010~201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효과가 법인세수 증감률에 미치는 영향은 2013년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2014년 이후부터 상대적으로 약화
 - 2013년 이후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등의 영향이 2015년 이후 세수 실적에 본격적으로 나타남

법인세 비과세 감면정비(%)

	'08	'09	'10	'11	'12	'13	'14	'15
법인세조세지출/법인세	17.9	20.3	18.9	20.5	18.4	18.7	16.6	14.2
법인세 조세지출 증가율	13.2	2.0	- 1.7	30.6	- 7.8	- 3.1	- 13.6	- 10.0
법인세 증가율	10.6	- 10.0	5.7	20.4	2.4	- 4.5	- 2.7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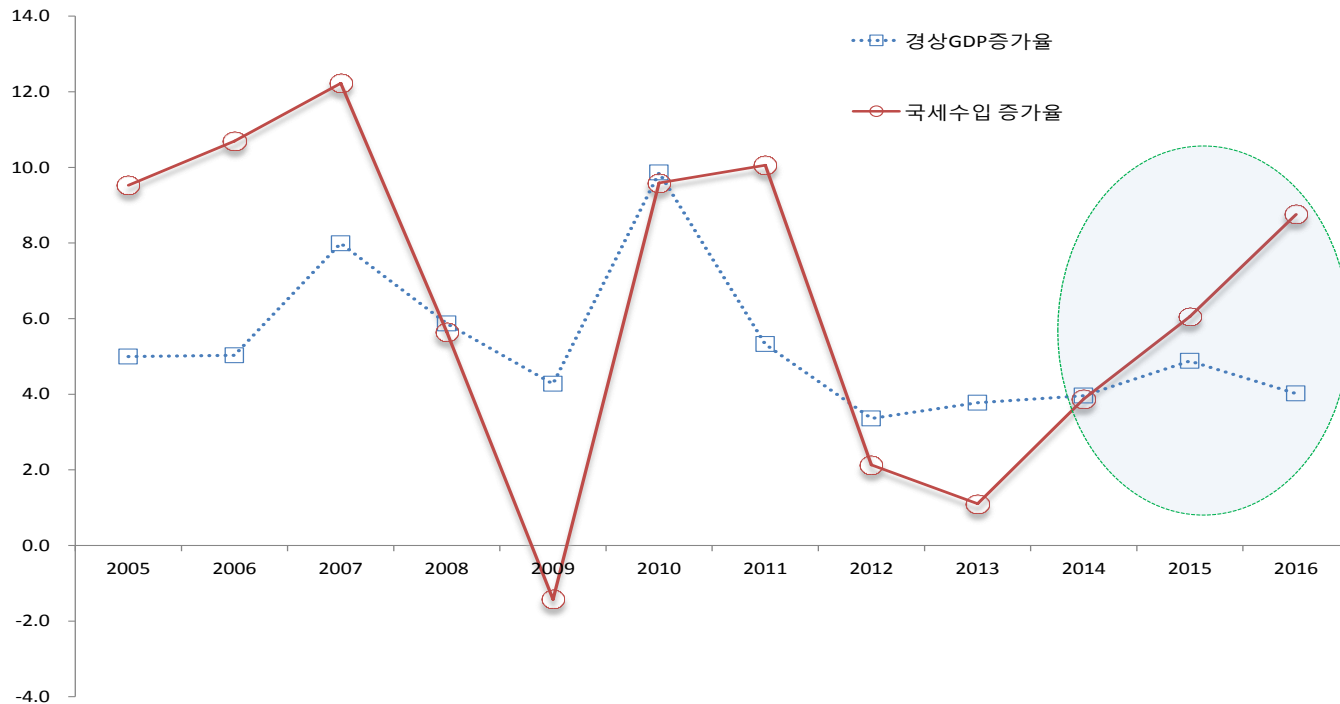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및 각 연도 결산개요

VI. 자산시장과 국세수입탄성치간의 관계



경상GDP증가율과 국세수입 증가율 추이

□ 2015년 이후 경기회복세 미약에도 불구하고, 세수증가율은 경상성장률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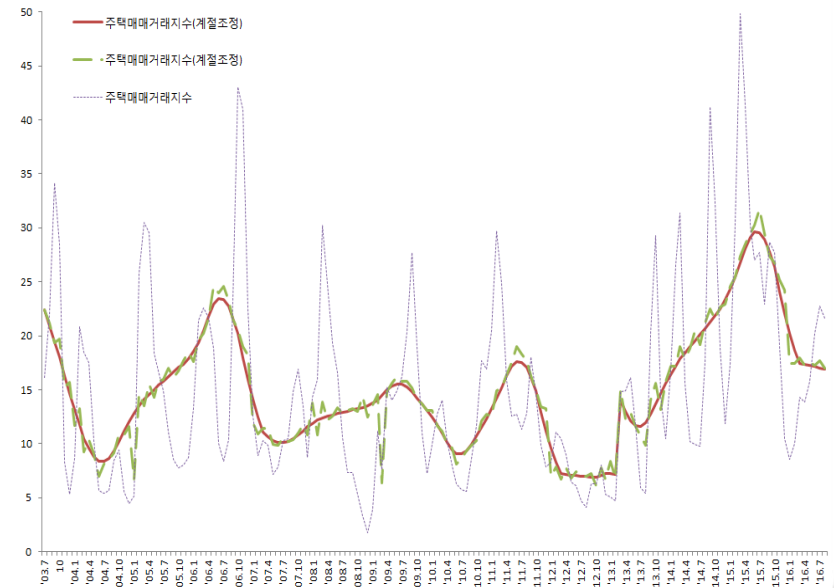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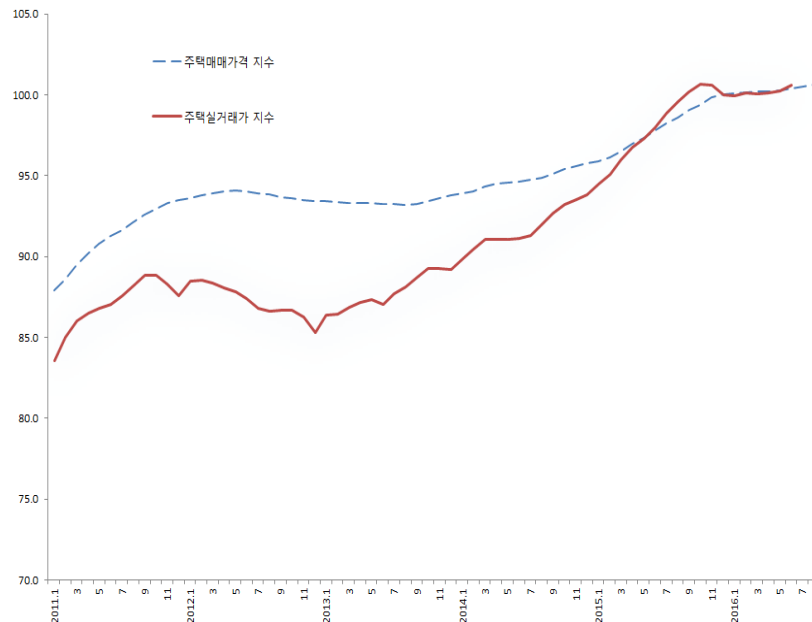


VI. 자산시장과 국세수입탄성치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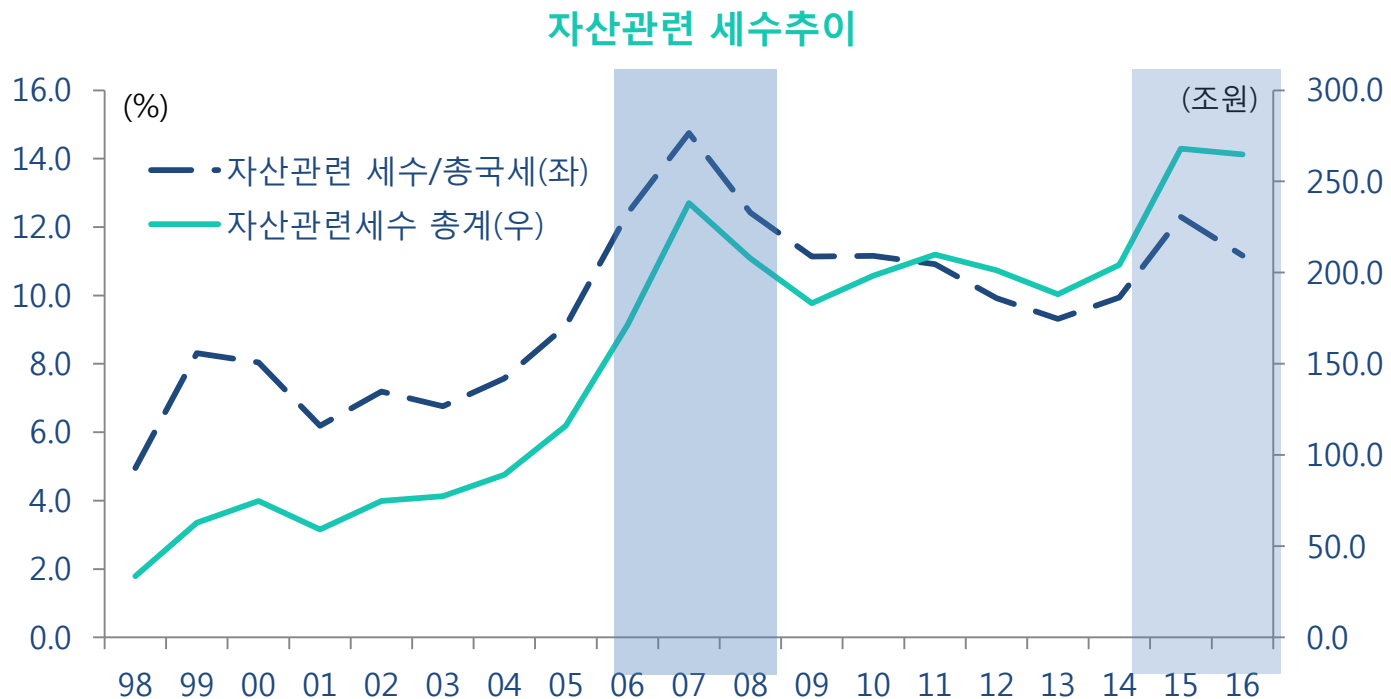
부동산 시장 동향

- 2014년 하반기 이후 자산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양호한 흐름 지속
 - 가계대출 완화,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으로 2014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 및 증권시장이 반등하기 시작,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VI. 자산시장과 국세수입탄성치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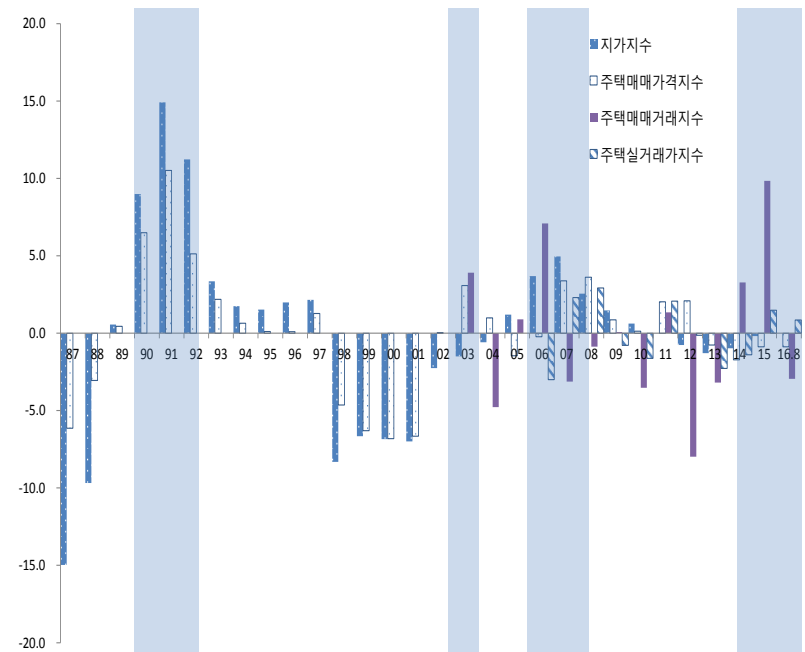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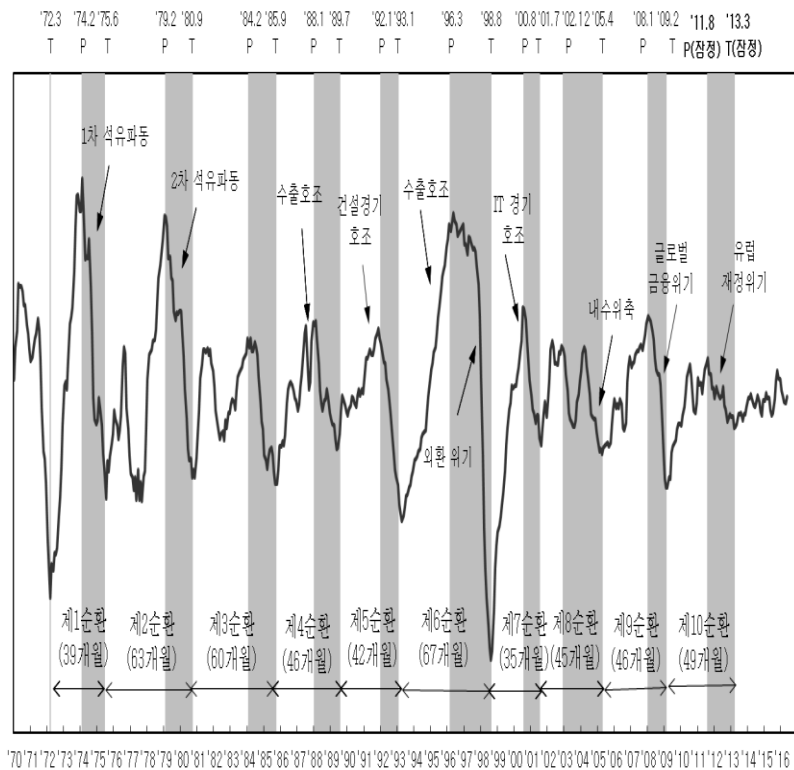
- 자산시장의 호조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관련세수의 증가가 2015년 이후의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
 - 자산관련 세수가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2014년 9%대 > 15년 12.3%
 - 개인 및 기업의 자본이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득세 법인세 증가에도 일부 영향



VI. 자산시장과 국세수입탄성치간의 관계



경기순환국면과 부동산시장 경기



VI. 자산시장과 국세수입탄성치간의 관계



경기순환국면과 부동산시장 경기

	경기 확장기		부동산 시장 boom 유무
	저 점	정 점	
제4순환기	1985. 9	1988. 1	
제5순환기	1989. 7	1992. 1	○
제6순환기	1993. 1	1996. 3	
제7순환기	1998. 8	2000. 8	
제8순환기	2001. 7	2002.12	○
제9순환기	2005. 4	2008. 1	○
제10순환기	2009. 2	2011. 8	
제11순환기	2013. 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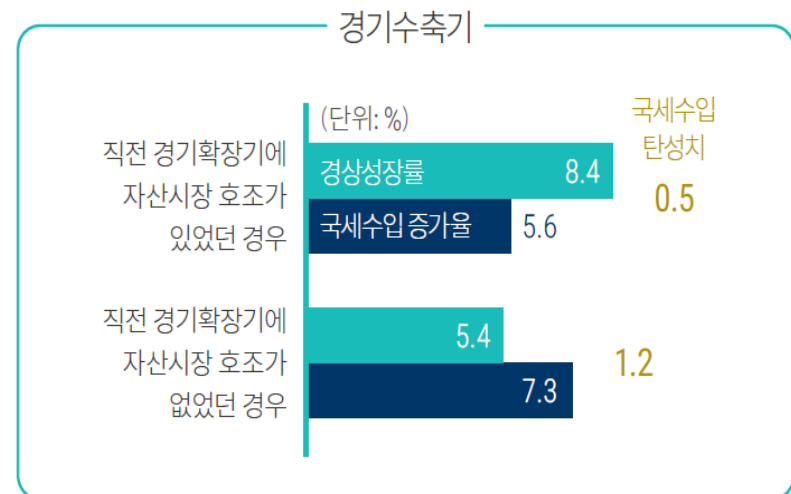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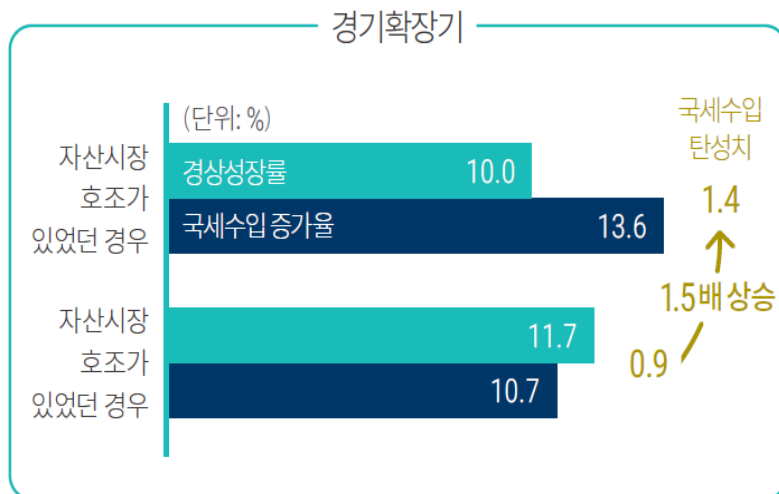
VI. 자산시장과 국세수입탄성치간의 관계



경기순환국면에 따른 자산시장과 국세수입탄성치 간의 관계

- 자산시장의 호황을 동반한 경기확장기의 국세탄성치는 그렇지 않은 경우의 1.5배로, 성장속도에 비해 세수가 높은 탄성으로 증가
- 자산시장의 호황을 동반하였던 경기확장기가 수축국면으로 전환될 때 국세탄성치는 성장둔화 속도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하는 경향

국세수입 탄성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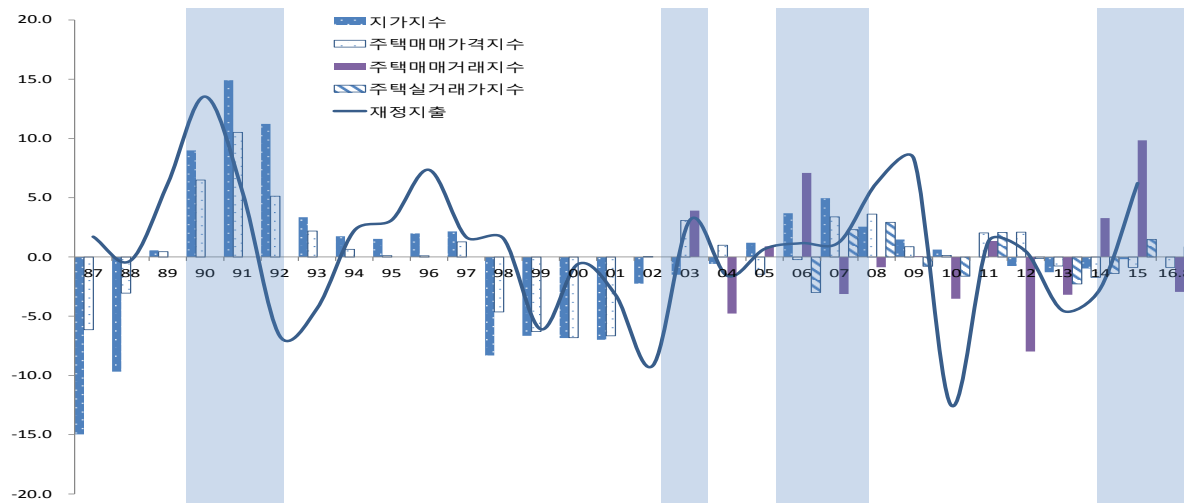
VI. 자산시장과 국세수입탄성치간의 관계



부동산 시장과 재정운용

-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가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침
 - 부동산시장 사이클과 재정지출 사이클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
 -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른 이례적인 재정수입 증가가 재정지출의 증가로 이어짐을 의미

부동산 시장 사이클과 재정지출 사이클 간의 관계



Ⅶ. 요약 및 결론

❑ 2017년 국세수입은 최근까지 세수호조를 견인하였던 일시적 요인들이 약화됨에 따라 증가세 둔화가 예상

- NABO 국세수입 증가율 : 2016년 8.8% → 2017년 3.0%
- 다만 행정부의 2017년 세입예산안이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됨에 따라 201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 세입예산안의 국세수입 증가율: 16년 추경대비 3.9%(+9.0조원), 16년 NABO 전망대비 2.0%(+4.7조원)

❑ 향후 재정운용은 최근의 세수실적 개선이 경기적 요인보다는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추세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 2015년 이후 세수실적 개선은 수출, 투자, 민간소비 등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미약한 가운데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가격 상승이 견인
-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자산시장 호조세가 약화될 경우 세수여건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 상존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의 실적악화로 내년 국세수입의 하방위험 확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016. 10.

재정정책분석과



CONTENTS

1.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 1
2. 중기 재정총량 분석 / 3
3. 국가채무 분석 / 6
4. 분야별 자원배분 분석 / 8
5. 중장기 재정과제와 재정운용 방향 / 13

1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가. 2017년도 예산안

- 2017년 총수입은 전년 본예산(391.2조원) 대비 6.0% 증가, 전년 추경(401.0조원) 대비 3.4% 증가한 414.5조원으로, 총지출은 전년 본예산(386.4조원) 대비 3.7% 증가, 전년 추경(398.5조원) 대비 0.6% 증가한 400.7조원으로 처음으로 400조원 초과
 - 국세수입 증가율 8.4%(2016년 본예산 대비): 행정부의 경상성장률(4.1%)과 총지출 증가율(3.7%)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편성
 - 총지출 증가율 3.7%: 2016년 본예산 증가율(2.9%) 보다 높지만 2016년 추경 대비 0.6% 증가에 그침
 - 2009~2015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4.0%), 행정부 경상성장률(4.1%)보다 낮음
- 세수 호조에 따른 총수입 증가율(3.4%)이 총지출 증가율(0.6%)보다 높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감소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소폭 증가
 -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전년 본예산 대비 8.8조원(0.6%p), 전년 추경 대비 10.9조원(0.7%p) 감소
 - 관리재정수지: ('16본예산) -36.9조원, GDP의 -2.3% ('16추경) -39.0조원, GDP의 -2.4% ('17예산안) -28.1조원, GDP의 -1.7%,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전년 본예산 대비 0.3%p, 전년 추경 대비 1.1%p): 2014년(1.6%p), 2015년(2.0%p), 2016년 본예산 증가폭(2.2%p)보다 낮은 수준
 - 국가채무: ('16본예산) 644.9조원, GDP의 40.1% ('16추경) 637.7조원, GDP의 39.3% ('17예산안) 682.7조원, GDP의 40.4%

1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우리 경제가 2017년 이후 경제성장 회복세 등을 전제로, 2016~2020년 총수입은 연평균 4.4%, 총지출은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총수입은 2016년 추경 401.0조원에서 2020년 476.4조원으로 연평균 4.4% 증가 전망
- 국세수입 호조(4.5%)와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금수입의 증가(5.2%)에 기인
- 총지출은 2016년 추경 398.5조원에서 2020년 443.0조원으로 연평균 2.7% 증가 전망
- 낮은 재량지출 증가(0.6%)에도 불구하고 의무지출의 빠른 증가(4.9%)에 기인

□ 총수입 증가율(4.4%)이 총지출 증가율(2.7%)보다 빨라 재정건전성이 개선

- 관리재정수지: ('16추경) -39.0조원(GDP 대비 -2.4%) → ('20계획) -20.4조원(GDP 대비 -1.0%)으로 단계적 개선
- 국가채무: ('16추경) 637.7조원(GDP 대비 39.3%) → ('20계획) 793.5조원(GDP 대비 40.7%)로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

2

중기 재정총량 분석



가. 재정정책 기조 분석

□ 2017년 예산안을 비롯하여「2016~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운용기조는 확장적 재정기조를 보이지는 않음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15결산, '16추경) -2.4% → ('17예산안) -1.7% → ('18계획) -1.4% ('19계획) -1.2% ('20계획) -1.0%로 점점 감소
- 재정충격지수(FI): -0.64(전년 본예산 대비), -0.78(전년 추경 대비)
- ('18계획) -0.26 ('19계획) -0.15 ('20계획) -0.22

양(+)의 값: 전년도에 비해 확장적, 음(-)의 값: 전년도에 비해 긴축적

□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기조는 재정건전성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 다만 2017년 상반기 조기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하반기에 재정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재정의 상·하반기 균형적 운용 필요
※ 전기대비 실질성장률 전망: 2017년 상반기 1.44%, 2017년 하반기 1.47%
- 재정의 경기안정화 측면에서 전년 대비 지출증가 규모가 크지 않아 성장제고 효과는 약화

2

중기 재정총량 분석



나. NABO 전망과 행정부 계획 비교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예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계획의 실현가능성도 제고시킨 계획으로 보이며, 수립된 계획을 충실히 준수할 필요

- 동 계획은 2015년 이전 계획과 같이 낙관적 경제전망에 따라 국세수입 전망을 과대추계 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난 반면, 예전에 비해 중기적으로 재량지출 증가율을 과도하게 억누른 것으로 볼 수 없음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재량지출 증가율('18년 2.1%, '19년 1.8%) 이 NABO의 물가상승률 전망('18년 1.8%, '19년 1.8%)을 상회
- 다만, 재량지출의 2010~2016년 증가율(본예산 기준)은 3.8%이나 2016~2020년 증가율이 1.6%에 머물 계획인 점과 추경 편성 시 의무지출보다 재량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해 계획을 지키기 위한 노력 필요

2

중기 재정총량 분석



나. NABO 전망과 행정부 계획 비교

(단위: 조원, %, %p)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NABO(A)	401.4	415.8	434.0	452.5	472.1	4.1
	행정부(B)	401.0	414.6	436.1	456.3	476.4	4.4
	차이(A-B)	0.4	1.3	- 2.1	- 3.8	- 4.3	
총지출	NABO(A)	398.6	401.4	416.4	432.1	448.5	3.0
	행정부(B)	398.6	400.7	414.3	428.4	443.0	2.7
	차이(A-B)	0.0	0.7	2.1	3.7	5.5	
관리 재정수지	NABO(A)	- 35.3	- 26.3	- 25.3	- 24.6	- 23.3	
	행정부(B)	- 39.0	- 28.1	- 25.0	- 23.2	- 20.4	
	차이(A-B)	3.7	1.8	- 0.3	- 1.4	- 2.9	
국가채무	NABO(A)	634.7	677.2	717.3	753.1	792.6	5.7
	GDP 대비 비율	39.1	40.2	40.8	41.1	41.4	
	행정부(B)	638.4	682.7	722.5	756.8	793.5	5.6
	GDP 대비 비율	39.4	40.4	40.9	40.7	40.7	
	차이(A-B)	- 3.7	- 5.5	- 5.2	- 3.7	- 0.9	
	GDP 대비 비율	- 0.3	- 0.2	- 0.1	0.4	0.7	

- 주: 1) 2016년 행정부의 총수입, 총지출, 관리재정수지는 추경수치임
 2) 2016년 행정부의 국가채무는 행정부 전망 수치임
 3) NABO 의무지출 전망은 2016년 186.7조원에서 2020년 231.7조원으로 연평균 5.6% 증가
 4) 행정부 의무지출 전망은 2016년 186.7조원에서 2020년 226.2조원으로 연평균 4.9% 증가
 5) 재량지출은 2016년 211.9조원에서 2020년 216.8조원으로 연평균 0.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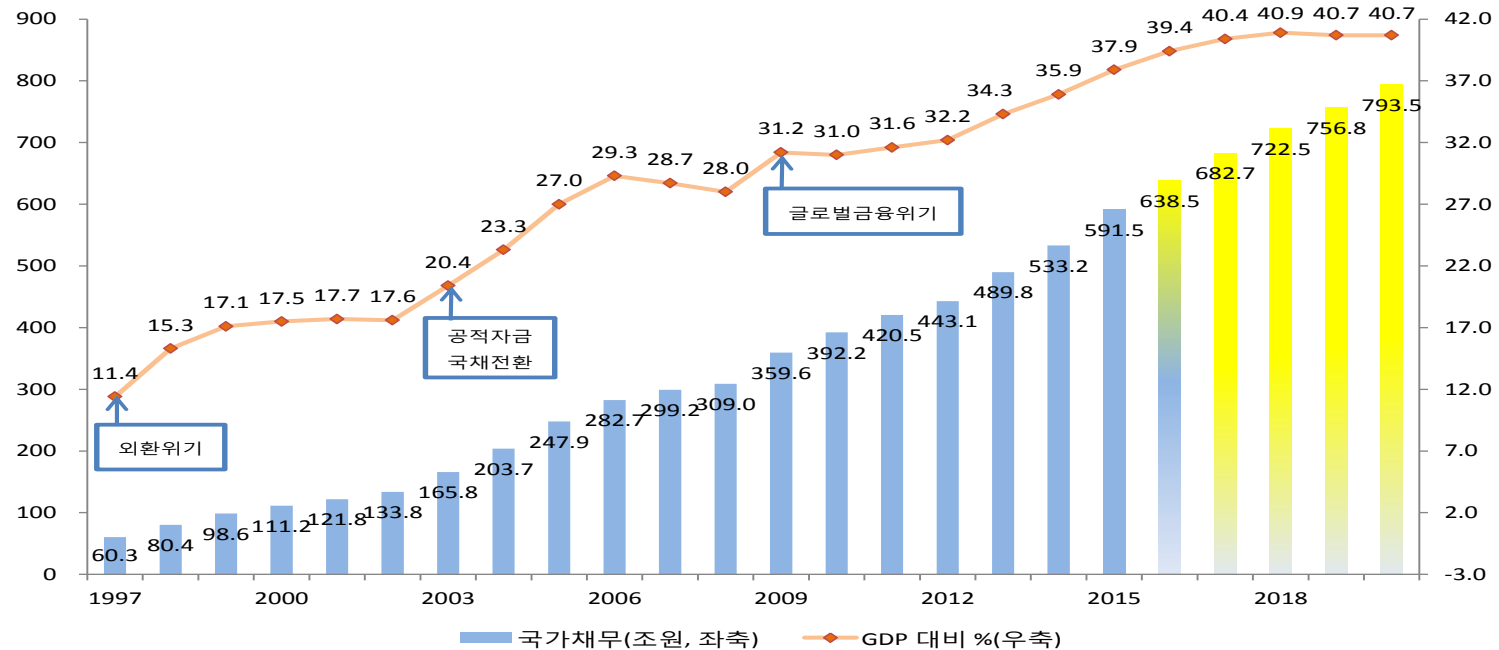
3

국가채무 분석



추이와 전망

□ 2017년 「국가재정법」 기준 국가채무(행정부계획)는 682.7조원으로 GDP 대비 40%를 초과할 전망



□ 2015년 우리나라의 OECD 기준 국가채무는 GDP 대비 44.8%로 OECD 평균(115.5%)보다 낮은 수준이나, 소득수준, 인구고령화, 국가채무의 증가속도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 관리 필요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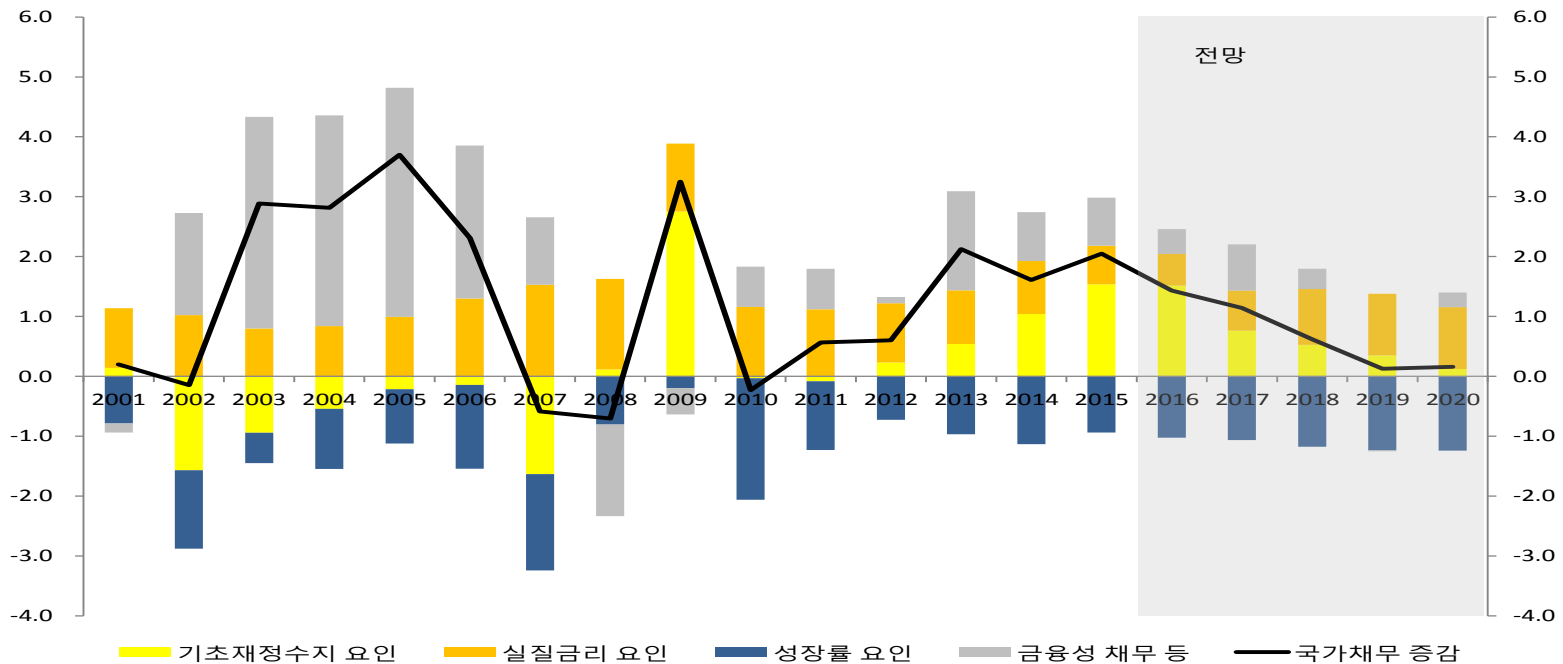
국가채무 분석



증가요인 분석

□ 2015~2020년 국가채무 증가요인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주로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 확대에 기인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가 증가될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

- 국가채무 증가(5.5%p): 기초재정수지적자(4.8%p), 실질금리에 따른 이자지출(4.8%p), 경제성장률(-6.7%p), 금융성 채무 등(2.5%p)



4

분야별 자원배분 분석



가. 2017년 예산안 자원배분 특징

□ 사회복지, 문화·관광, 교육,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대폭 증가한 반면, 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감소하고 국방 및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소폭 증가

- 총지출 증가율(3.7%)보다 높은 분야: 사회복지(6.1%), 문화·관광(7.6%), 교육(6.0%), 일반지방행정(7.4%)
 -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관광 분야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비 등이 증가
 - ※ 보건 분야는 건강보험가입자지원 등이 축소됨에 따라 전년 본예산 대비 -2.1%
 - 교육 및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이전재원 증가에 기인
- 국방(3.1%), 공공질서·안전(2.9%) 분야의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3.7%)보다 낮음
 - 국방과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군인보급 증가 및 경찰인력 증원 등에 따라 인건비 증가
- 반면 SOC 분야인 교통·물류 분야(-9.2%)와 국토·지역개발 분야(-9.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2.5%)의 증가율은 감소
 - 교통·물류 분야와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건설보조금 등 자본지출이 감소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에너지공기업의 출자 등이 감소

4

분야별 자원배분 분석



나. 2017년 예산안 분야별 자원배분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성장률 제고효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0.13%p로 2016년 예산안(0.18%p)보다 낮게 추정, 취업자수증가율 제고효과는 0.19%p

- 성장률 제고효과: 국방(0.05%p), 공공질서·안전(0.02%p) 등 증가, 사회복지분야는 0.006%p에 그침. SOC 분야(국토·지역개발(-0.03%p), 교통·물류(-0.02%p)) 등 감소
- 취업자수증가율 제고효과: 국방(0.04%p), 일반지방행정(0.03%p), 교육(0.03%p) 등 증가, 사회복지 분야는 0.01%p에 그침. 교통·물류(-0.02%p), 국토·지역개발(-0.04%p) 등 감소

(단위: 전년 GDP 대비 %p, 전년 취업자 수 대비 %p, 조원)

분야	2016 경제성장률 변화	2017 경제성장률 변화	2017 취업자수증가율 변화	2016년 대비 2017년 예산안 증감액	분야	2016 경제성장률 변화	2017 경제성장률 변화	2017 취업자수증가율 변화	2016년 대비 2017년 예산안 증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0.04	0.020	0.030	0.5	보건	0.01	- 0.005	- 0.008	- 0.2
과학기술	0.01	0.005	0.013	0.3	사회복지	0.01	0.006	0.013	5.2
교육	- 0.01	0.012	0.026	0.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0.02	0.003	0.003	- 0.2
고등 및 물류	- 0.02	- 0.015	- 0.022	- 1.5	일반·지방행정	0.01	0.013	0.028	5.8
국방	0.04	0.046	0.035	1.2	통신	- 0.01	- 0.026	- 0.043	- 0.5
국토 및 지역개발	- 0.11	- 0.027	- 0.042	- 0.7	통일·외교	0.03	0.005	0.009	0.04
농림수산	0.00	- 0.001	- 0.002	- 1.2	환경	0.02	- 0.003	- 0.002	- 0.05
문화 및 관광	0.04	0.012	0.021	0.2	증지출	0.18	0.132	0.187	10.9

4

분야별 자원배분 분석



나. 2017년 예산안 분야별 자원배분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과거 재정지출에 따른 성장 제고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성장 잠재력 하락을 방지하는 재정운용 필요

- 성장률 제고효과: 0.13%p(2017년 예산안), 0.18%p(2016년 예산안), 0.25%p(2015년 예산안), 0.11%p(2014년 예산안)
- 민간지출의 성장기여도는 하락(6.9%p(2010년)→1.8%p(2015년))하는 반면, 재정의 성장 기여도는 상승(-0.4%p(2010년)→0.7%p(2015년))

□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예산비중이 큰 복지지출의 관리 필요

- 사회복지 분야의 성장률 제고효과는 0.006%p이고, 취업자수증가율 제고효과는 0.01%p로 다른 분야보다 경제적 효과가 작았음
 - 교육(6.1%), 문화관광(6.9%), 일반지방행정(7.4%)처럼 전년 대비 예산이 6% 이상 증가한 분야의 성장률 제고효과는 각각 0.012%p, 0.012%p, 0.013%p로 사회복지 분야보다 2배 이상 높았음
 -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증가한 국방, 일반지방행정, 교육 분야의 취업자수증가율 제고효과는 각각 0.04%p, 0.03%p, 0.04%p로 사회복지 분야보다 3배 이상 높았음

4

분야별 자원배분 분석



다. 주요 분야 자원배분 방향

-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공적연금, 주택, 노동 부문이 지출 증가를 주도하면서 2016년 123.4조원(총지출 대비 31.9%)에서 2020년 147.7조원(33.3%)으로 연평균 4.6% 증가할 계획
 -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
 -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경우 신규 복지제도 도입 시 중장기적 재정총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도입여부와 규모를 결정
 - 복지분야 재량지출은 평가결과에 기반한 사업 운영방식의 개선과 필요 시 예산 삭감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모색
- 교육 분야는 세수호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증가에 따라 2016년 53.2조원에서 2020년 63.4조원으로 연평균 4.5%의 증가세
 - 교육 분야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수 감소를 고려하여 자원배분 방향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
 - ※ 유치원~고등학교 학생 수(만명): ('05) 838→('15) 682

4

분야별 자원배분 분석



다. 주요 분야 자원배분 방향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에너지공기업 출자예산 등이 감소함에 따라 2016년 16.3조원에서 2020년 15.2조원으로 연평균 5.6% 감소할 계획

- (중소기업 지원 부문) 금융지원으로 한계 중소기업의 증가, 소상공인의 밀집도 증가 등 비효율이 발생함으로 주요 재원을 수출지원 및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에 배분하는 것이 효과적
- (에너지 지원 부문) 향후 세계 원자재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시장에서 자원 확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 추진 필요

□ SOC 분야는 1990년대 토목건설의 높은 증가세에 힘입어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주요 외국에 비해 높고 도로부문의 부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인한 이용률 저조 등으로 2016년 23.7조원에서 2020년 18.5조원으로 연평균 6.0% 감소할 계획

- 급속한 인구고령화, 지속적인 복지수요 확대, 사회보험제도의 성숙화 등에 따라 재정지출구조가 복지 투자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SOC 분야 등 경제사업 분야의 비중 축소는 불가피
- 향후 SOC 분야는 실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효율성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선별하여 신규투자를 하되,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보수 비중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

5

중장기 재정과제와 재정운용 방향



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 대내외 경기부진과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면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저성장 기조 하에서 증가할 전망이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필요
 - NABO의 「2016~2060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16~2060년 동안 의무지출이 연평균 5.0% 증가하여 총지출은 2016년에 GDP 대비 23.9%에서 2060년 32.2%로 증가 예상
-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재정지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출의 효율화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정책목표와 우선순위를 고려한 분야 및 부분 단위의 거시적 평가를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축소시키고 전략적 자원배분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예산집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지출이나 부정수급을 제도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감소시킬 필요

5

중장기 재정과제와 재정운용 방향



나.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 최근 세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국세수입 증가율은 인구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둔화로 점차 하락할 전망

- 2016~2060년 국세수입 증가율은 3.6%로 최근 20년간 연평균 증가율(8.3%)과 10년간 증가율(7.6%)에 도달하지 못해 조세수입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향후 증가하는 복지재원 등 지출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사회적 구조변화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필요

- 현 정부의 세입확충 방안 중 비과세·감면 정비방안을 통한 세수확보는 계속된 일몰연장 등으로 지속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 2013~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감면액 기준으로 매년 일몰예정 항목의 80% 이상이 일몰연장이 이루어짐
- 향후 우리나라의 세제는 소득세와 소비세 비중을 높이고, 재산세의 경우 거래세 중심인 주식과세를 소액주주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소득세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
 -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비율(12.7%)에 진입했던 OECD 26개국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0.7%p)와 재산세(0.9%p)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세(-5.0%p)와 소비세(-2.9%p)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5

중장기 재정과제와 재정운용 방향



다. 재정준칙의 법제화

□ 행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채무준칙 및 재정수지준칙의 상한 설정과 PAYGO 제도의 국회 도입 선결과제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채무준칙(45% 국가채무비율), 재정수지준칙(3% 관리재정수지 적자)
 - EU의 재정준칙 기준(3% 재정적자, 60% 국가채무비율)은 EU의 국가채무와 경제성장을 전망치 등을 기준으로 도출된 것이므로 우리나라 준칙목표에 참고하기 어려움
 - GDP 대비 3% 재정적자를 초과: IMF 외환위기(1998년, 1999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으로 달성하기 쉬운 재정목표
- PAYGO 제도 강화
 - 미국과 달리 국회에 예산편성권이 없고 자원조달방안 마련의 현실적 문제에 따라 국회의원의 재정수반 입법이 어려워질 수 있음

□ 국가채무 총량관리의 근본적 대책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에 적합한 재정준칙의 도입을 검토 필요

-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수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채무의 통제가 자동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형태를 고려

5

중장기 재정과제와 재정운용 방향



라. 중장기 재정제도 개선과제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한 재정운용, 재정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 「재정건전화법」에서 재정준칙의 법제화, 사회보험재정 건전성 관리 등의 내용은「국가재정법」 제5장 ‘재정건전화’에 수 개 조항으로 신설 가능
 - 「재정건전화법」제정안(2016.8. 발표)을 살펴보면, 「국가재정법」과 입법목적이 유사하고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평가, 장기 재정전망 시기 및 절차 등 법안의 핵심 사항이 「국가재정법」 내용과 유사
- PAYGO 제도 강화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로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법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심사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한 재정운용 필요
 - 우리나라도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공론화하여 독일처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재정)지속가능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 필요
- 행정부는 재정정보 공개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범위나 전달체계가 재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제한적이고 정보의 검색·집계 등이 용이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전망의 근거가 되는 거시경제전망지표 미발표, dBrain과 열린재정을 통해 사업유형별 분류, 결산 기준의 순계자료, 추경예산의 기금자체변경 등이 미포함



감사합니다

